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06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9. 접수 제17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9. 접수 제17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6,960,7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36,960,710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9. 접수 제17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근저당권은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위 부분 청구취지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C 사이의 신용보증 및 구상금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2017. 4. 11. E은행으로부터 1억 7,850만 원을, 2019. 6. 7. 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2,400만 원(= 4억 1,600만 원 + 2억 8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수산물 거래 및 C의 횡령

피고는 수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와 수산물계약판매 형식의 거래를 하였는데, 위 거래는 수산물 대금 중 20%를 B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피고가 부담하여 수산물을 매입한 다음, B이 그 수산물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면 피고가 부담한 수산물 대금 80%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더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B의 대표이사인 C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71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고 몰래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발각되자 C은 2020. 1. 3.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B,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등기

B은 2020. 1. 9.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C은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별지3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각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B은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9. 접수 제17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C은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9. 접수 제17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9. 접수 제17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이하 순서대로 ‘제2, 3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E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B의 대출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B을 대위하여 2020. 5. 12. E은행에 181,200,072원, 2020. 5. 14. 기업은행에 632,801,545원 합계

814,001,617원을 변제하였다.

마. 별지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카단100045호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2021. 2. 4.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은 36,960,71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와 C에게 814,001,617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이 인정되고, B와 C이 피고와 제1, 2, 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제1, 2, 3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B와 C의 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었고, C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제1, 2, 3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다만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와 C에게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별지3 기재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와 거래를 하여 오던 중 B 대표 C의 횡령행위로 인해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받은 것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 3. C의 수산물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C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별지3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포항세무서장의 압류, 포항시 북구청장의 압류가 이미 설정 또는 집행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C이 횡령의 범죄행위에까지 이른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는 C과 B이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들을 모두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사경화, 판사 나소라, 판사 조재혁

별지1

부동산 목록

1. 포항시 남구 F 대 1894㎡
2. 포항시 남구 G 대 1684㎡
3. 포항시 남구 H 대 49㎡
4. 포항시 남구 F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수위실 17.95㎡
5. 포항시 남구 F, G, H
I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2층 사무실 및 휴게실
1층 141.12㎡
2층 141.12㎡
6. 포항시 남구 F, G, H
J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 136.46㎡
7. 포항시 남구 F, G, H
K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냉동공장
1층 896.62㎡
2층 888.72㎡
3층 888.72㎡
8. 포항시 남구 F, G, H
L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처리장 545.88㎡

9. 포항시 남구 F, G, H

M호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통조림실 284.52㎡

10. 포항시 남구 F, G, H

N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조장 39.17㎡

11. 포항시 남구 F, G, H

O호

시멘트 블록조 및 철근조 슬래브지붕 단층 양수실 11.5㎡

12. 포항시 남구 F, G, H

P호

철골조 스테이지붕 단층 처리장 166.314㎡

13. 포항시 남구 F, G, H

Q호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노조대기실 25.42㎡

14. 포항시 남구 F, G, H

R호

시멘트블록조스�테이지붕단층 기숙사 60.46㎡

15. 포항시 남구 F, G, H

S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목욕탕 50.80㎡

16. 포항시 남구 F, G, H

T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공구실) 36.06㎡

17. 포항시 남구 H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택 131.20㎡

18. 포항시 남구 U 대 86㎡

19. 포항시 남구 V 대 17㎡

20. 포항시 남구 W 대 99㎡

21. 포항시 남구 X 대 457㎡

22. 포항시 남구 Y 임야 225㎡

23. 포항시 남구 Y

[도로명주소]포항시 남구 Z

조립식 경량 철골조 칼라쉬트지붕 단층 직원식당 181.44㎡

24. 포항시 남구 AA 임야 85㎡. 끝.

별지2

부동산 목록

1. 포항시 남구 AB 대 283㎡
2. 포항시 남구 AB AC동
[도로명주소] 포항시 남구 AD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31.64㎡
2층 130.56㎡
3. 포항시 남구 AE 대 9㎡
4. 포항시 남구 AF 대 7㎡. 끝.

별지3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포항시 북구 AG에 있는

AH아파트 AI동

[도로명주소]

포항시 북구 AJ

전유부분의 표시

건물번호 : AK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46.1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포항시 북구 AG 대 35042.8㎡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5042.8분의 66.188. 끝.

